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이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

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II. 검토의견

1. 정의규정(안 제2조)

안 제2조제4호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자의 한 사람으로 열거되어 있는 친권자의 경우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는바¹⁾ 보

호자의 정의를 그 밖에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할 경우 보호자의 정의가 축소 해석될 우려가 있음.

반면에 안 제3조제5항은 “보호자와 교원 등은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학생”으로 규정하여 보호자의 보호의무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²⁾.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통합적 지원을 의미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의미를 고려할 때 보호자의 정의는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⁴⁾.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³⁾ 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u>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u> 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u>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u> 을 말한다. 4. ----- ----- <u>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u> 를 말한다.

1)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2)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⑤ 보호자와 교원 등은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주체(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1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교육장이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을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설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는 교육장이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와 운영의 책임 주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교육지원청의 관리와 실무를 담당하며 지역 단위의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는 교육장⁵⁾이므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주체를 교육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참고입법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12조(학생별 지원·관리)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u>3.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u>	제12조(학생별 지원·관리)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u>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4. 학생별 지원·관리 위탁기관 지정 등의 위임(안 제12조제7항)

안 제12조제2항은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⁸⁾, 위탁기관 지정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안 제1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8)안 제12조(학생별 지원·관리) ②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7항은 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 법령 간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12조(학생별 지원·관리) ⑦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교육부령</u> 으로 정한다.	제12조(학생별 지원·관리) ⑦ ----- ----- ----- ----- <u>대통령령</u> -----

5.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관련 중복규정 삭제(안 제16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은 교육감이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⁹⁾, 안 제18조제1항¹⁰⁾ 또한 교육감이 지원대상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을 조기

9)안 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안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기존 지원 정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다른 시·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다른 시·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관련 동일한 내용을 안 제16조제2항과 제18조제1항에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8조제1항에서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6.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전문기관 위탁(안 제17조제4항)

안 제17조제4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학생과 관련된 매우 포괄적인 정보를 취급하게 되므로11) 해당 전문기관의 시스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엄격한 점검 및

11)안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학생 발견,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5.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문기관에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u>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u>전문기관에</u>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이 경우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7. 시·도 교육청과 교육행정기관 용어 정비(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안 제2조제5호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로 정의하고 있어 시·도 교육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런데 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은 시·도 교육청과 교육행정기관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어 교육행정기관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시·도 교육청은 삭

제하고 교육행정기관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¹²⁾.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5. ----- ----- ----- -----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u>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u> ,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해당 기관 및 단체는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⑥ ----- ----- ----- ----- ----- <u>교육행정기관</u> ----- ----- ----- ----- ----- ----- -----
⑦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학교, <u>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u> ,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	⑦ ----- <u>교육행정기관</u> ----- -----

12) 참고입법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학생	-----
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	-----
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	-----
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
취급할 수 있다.	-----

8. 정보의 요청 및 활용(안 제18조)

안 제17조는 정보의 관리와 통합을, 안 제18조는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8조는 교육감이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하는 정보를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기존 지원 정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등”으로 규정하여 요청 정보의 종류를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요청 대상 정보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 즉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¹³⁾와 같다고 설

13)안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각목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보유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연계·가공한 정보

명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정보 수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청 대상 정보를 제17조제2항의 정보와 동일하게 명시하고, 정보 보유기관 또한 제17조제2항의 보유기관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기존 지원 정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다른 시·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① ----- ----- -----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 ----- ----- ----- ----- ----- ----- -----

7.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9.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9.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 규정 삭제(안 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7조제1항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정지 의무 및 예외를 규정하며 제73조제1항에서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을 두고 있음¹⁴⁾.

안 제19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위반 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19조의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절차 및 제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안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 제19조를 삭제하였음.

그 밖의 간단한 자구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이 화 실)